

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Regulation

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따른
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

2026.04.16

감사위원회 지원센터
(Audit Committee Institute)

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따른
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

자기주식 보유·처분 공시 강화 입법예고⁽¹⁾

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
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
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함

3차 상법 개정 주요 내용

- ✓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
- 법 시행 이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
- ✓ 임직원 보상·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
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하여
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

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

01

자기주식 보유현황, 처리계획의 공시 대상을
모든 상장회사로 확대

02

자기주식과 관련된 신탁계약, 교환사채 발행
및 장내 매도 규정 등을 정비

(1)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“3차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자기주식 보유·처분 공시도 강화됩니다”, 26.3.31

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따른
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

01_자기주식 보유·처분계획 및 이행내용 공시



개정 배경

- 주총 승인 시점에 처분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* 투자자 및 일반주주 입장에서 실제 자기주식의 처분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

*구체적이지 못한 보유기간 및 처분시기 예시

- ✓ (A사) 자기주식 보유기간은 각 주식보상제도 운영에 따른 지급 시점까지며, 자기주식 처분시기는 관련 주식보상제도 운영에 따른다.
- ✓ (B사) 자기주식 보유기간은 2027년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까지며, 동일기간 임직원에게 보상목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.



개정 내용

개정 전

- 자기주식을 1%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만 자기주식 보유현황·처리계획 공시

개정 후

- 자사주를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는 보유현황·처리계획을 공시

→ ‘자기주식 처리계획에 따른 실제 이행현황’ 등 구체적 정보로 연 2회 공시하도록 할 예정

※ 자기주식 취득·처분·소각 계획을 공시서류 제출 당시의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재한 경우 등에는 자본시장법상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 있음

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따른
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

02_자기주식 관련 규정 정비



개정 배경

-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의 처분행위가 금지되고 신탁계약 종료·해지시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함
-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이나 주주 균등처분이나 제3자 처분 외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 금지
- 자본시장법과 상법이 자기주식 처분 기간을 다르게 규정
 - 자본시장법: 대통령령이 정한 처분 기간
 - 상법: 자기주식 보유·처분계획에서 정한 보유기간



개정 내용

-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않도록 규율행위를 추가
-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을 일괄 삭제
- 불특정다수 대상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시장 매도 방식은 제한하되, 처분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외대량매매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
-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상법에서 정한 보유·처분계획의 기간을 기준으로 통일